

사단법인 해피맘

# 정관

( 20. 7. 21. 개정 )

## □ 제 1 장 총 칙

### 제1조(명칭)

이 법인은 사단법인 **해피맘**(이하 본회' )라 한다.

### 제2조(소재지)

본회의 사무소는 **서울특별시**에 둔다.

### 제3조(목적)

본회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데이트폭력 음주폭력 등 모든 폭력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치, 경제, 교육, 문화,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안전한 소비사회를 구현하며 이를 선양하여 대안을 만들고 제시하며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4조(사업)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을 한다.

- ① 안전한 사회를 위한 폭력 예방 및 근절 활동 사업
- ② 다문화가정 및 재난안전 취약계층 등의 안전한 사회활동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
- ③ 폭력피해근절, 사회안전을 위한 교육, 교양 강좌 및 서적, 문화 콘텐츠 제작 보급사업
- ④ 사회안전을 위한 국내외 시민단체 및 정부기관 연대 네트워크 구축 사업
- ⑤ 폭력 근절을 통한 건전가정 육성 사업
- ⑥ 안전한식품, 안전한 제품 등의 보급·정착을 위한 소비자권익보호사업
- ⑦ 기타 본 회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일체

### 제5조(지회 및 지부설치)

회원의 필요에 따라 외국이나 국내 대도시, 군소 지자체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부, 지회(센터)와 관련 연구소를 둘 수 있다.

## □ 제 2 장 회 원

### 제6조(회원의 자격)

본 회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, 그리고 대의원으로 나눈다.

- ① 일반회원은 본 회에 찬동하는 회원가입신청서를 내거나 참여단체를 통해 회원 되기를 신청한 자로 한다.
- ② 특별회원은 본 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여 특별회비를 납부한 후, 본 회 재정에 이바지하기를 희망하는 특별회원가입의 절차를 밟은 자로 한다.
- ③ 대의원은 본부이사, 지부장, 지회장(센터장), 지부장 및 지회장(센터장)이 추천한 자(5인 이내), 그리고 특별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통과한 자로 한다.

### 제7조(회원의 권리)

- ① 모든 회원은 각 지부와 지회의 총회를 통하여 본회 사업의 추진 및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단, 본부 총회(이하 '총회' 라 한다)에는 일반회원이 출석할 의무가 없으며, 또한 의결권도 없다.
- ② 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.

**제8조(회원의 의무)**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
- ①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
- ②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이행
- ③ 일반회원은 일반 회비 납부 또는 회비 대신 봉사하는 활동가
- ④ 특별회원은 년 회비와 본인이 희망하여 기여하고자 약속한 부담금의 납부
- ⑤ 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에 참여할 의무를 진다.

**제9조(회원의 탈퇴)**

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
**제10조(회원의 상벌)**

- ①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- ② 본 회의 회원으로 본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·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
## □ 제 3 장 임 원

**제11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**

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- ① 이사장(본회의 회장이며 대외적으로는 상임대표라 칭함) : 1명
- ② 이사 : 5인 이상 15명 이내로 하되, 상임이사로 이사장(회장)과 사무총장 2인을 포함하여 정수로 둔다.
- ③ 감사 : 2인 이하
- ④ 이사장은 이 법인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, 고문, 공동대표(참여 단체들의 대표), 부회장 등 명예직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으며, 지도위원 약간 명을 위촉하고 각 분과위원과 그 장을 임명한다. 단, 분과위원 등의 구성과 직능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12조(임원의 선임)**

- ① 임원 중 회장의 선출은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,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에 상정하여 추인 선출 방식으로 선임한다.
-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한다.
-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여야 한다.
-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임원의 해임)**

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- ① 본 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
- ② 임원 간의 분쟁,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
- ③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#### 제14조(임원의 임기)

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#### 제15조(임원의 직무)

임원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.

- ① 회장은(상임대표)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되나 별도로 이사회의 의장을 이사 중에서 선임할 수도 있다.
-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일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 이사 중에서 회장은 사무총장을 선임하여 사무국 업무를 총괄케 한다.
-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  - 1호. 본 회 재산과 회계감사
  - 2호.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업무에 관한 감사
  - 3호. 1 2호 감사결과 잘못되었거나 옳지 않은 일을 발견했을 때, 이사회나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.
  - 4호. 제 3호 보고를 위해 총회나 이사회 개최를 요구한다.
  - 5호.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#### 제16조(회장의 직무대행)

-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회장이 지명하거나 지명자가 없을 경우는 사무총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#### 제17조(직원)

본회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직원을 이사회 승인을 얻어 본 회 회장이 임명한다.

## □ 제 4 장 총 회

#### 제18조(총회의 구성과 구분)

총회는 본회 최고 의결기관이며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-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상반기 중 회장이 소집한다.
- ②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-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총회 구성원인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## 제19조(총회의 기능)

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- ① 임원을 뽑고 해임하는 일
- ② 정관을 바꾸거나 해산에 관한 일
- ③ 사업계획이나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일
- ④ 기본재산의 처분 및 획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일
- ⑤ 기타 본회를 운영하는데 중요하다고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일

#### 제20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

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- ① 임원선출 및 해임에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-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
#### 제21조(의결정족수)

총회와 각 지부 및 지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□ 제 5 장 이 사 회

#### 제22조(이사회회 구성)

- ①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- ② 일상 업무 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집행이사회와 운영이사회를 둘 수 있다. 단 집행이사회회 구성과 직능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
#### 제23조(소집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회와 임시이사회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회는 분기별로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이사회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- ② 회장은 회의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## 제24조(이사회회 소집특례)

-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- 1호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
  - 2호 <2015. 3. 25. 삭제>
- ② 이사회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꺼림으로써 10일 이상 이사회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# 제25조(서면결의)

- ① 회장은 이사회에 회의에 부칠 사항 중 가벼운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#### 제26조(의결정족수)

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# 제27조(이사회 의결사항)

이사회는 다음 일을 결정한다.

- ①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운영에 관한 일
- ② 총회의 위임을 받아 규정을 고치거나 만드는 일
- ③ 권위된 임원 선출 및 이사 이외의 명예직 또는 산하 간부 직원을 선출하는 일
- ④ 총회나 각 회의에서 위임받은 일
- ⑤ 기타 회장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일

#### 제28조(회의록)

총회 회의록 및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를 회원들이 열람을 할 수 있게 사무국에 비치한다.

## □ 제 6 장 자 산 및 회 계

#### 제29조(재산의 구분)

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- ①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에 출연한 재산(부동산)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.
-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#### 제30조(기본재산의 처분)

- ① 본 회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이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.
- ② 본 회가 의무의 부담,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#### 제31조(수입금)

- ① 본회 수입금은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수입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받은 재산 및 출연금으로 충당한다.
- ② 본회 수입금은 공익을 위해 사용하며, 본회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다수로 구성된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한다.

### 제32조(회계년도)

본 회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### 제33조(보수)

임원은 무보수로 한다. 단, 본회에 상근하는 임원은 본 회 예산을 반영하여 보수를 적절하게 정할 수 있다.

### 제34조(차입금)

본회는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### 제35조(예산편성)

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예산은,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이내에 수립하여 편성하여야 하며,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

### 제36조(결산)

본회의 사업실적보고서 및 수입·지출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

### 제37조(회계감사)
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### 제38조(기부금실적의 공개)

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.

## □ 제 7 장 사 무 부 서

### 제39조(사무국)

-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아래 본부 사무국과 각 지부 지회 사무국을 둔다.
- ② 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③ 사무총장은 법정 등록 이사회 선임으로 회장이 임명하고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.
-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## □ 제 8 장 보 칙

### 제40조(정관의 개정)

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41조(해산) 본회는 다음 사항이 일어나면 해산한다.

① 총회에서 해산을 결정할 경우

1호. 해산결의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2호.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.

제42조(준용)

본 정관에 규정된 이외의 회계사무는 정부의 예산회계법에 따르며, 법인사무는 민법에 따른다.

## □ 부 칙

제1조(시행일)

① 이 정관은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한 임원으로 본다.

<2015. 3. 25. 전부개정>

# 사단법인 해피맘
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1, 401호(서초동, 삼우빌딩)  
대표이사 조 태 임



## 정관 변경사항

- 2013.8.1.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발급
- 2018.1.5. 명칭변경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재발급
- 2019.2.20. 법인 목적 및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재발급